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형태 분석을 통한 회계분식 가능성 연구

-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 정책학과

최 승 호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형태 분석을 통한 회계분식 가능성 연구

-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권 일 웅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최 승 호

최승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김 상 헌 (인)

부위원장 홍 준 형 (인)

위 원 권 일 웅 (인)

국문초록

그 동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실저축은행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었다. 이는 자산운용 방식에 있어서 PF대출 등 위험도가 큰 부동산 대출 집중화와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고금리 예금 조달에 기인하였다. 한편, 부실저축은행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화를 은닉하여 오다가 감독기관 검사 등을 통해 대규모 회계분식이 밝혀져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그동안 연구가 부족한 부실저축은행의 회계분식과 자본조달 방법과의 연관성을 실증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조달 방법 의사결정시 회계분식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진과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분식 이전 부실한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반면, 외부이해관계자는 회계분식된 공시자료에 기초한 왜곡된 경영상태만 파악하게 된다. 이는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간에 상호저축은행 경영상태를 파악하는데 정보 비대칭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하에서 자본조달 방법을 결정할 때 내부이해관계자는 정보우위를 활용하여 정보열위에 있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킬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자본조달 방법 결정시 회계분식을 한 상호저축은행은 내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보다는 외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후순위채권 발행

을 통한 자본 조달 방법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부실 발생시 동반되는 자본손실을 외부이해관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러한 정보 비대칭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회계투명성 강화 등 정책대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상호저축은행, 부실저축은행, 정보 비대칭, 자본조달, 후순위채권, 유상증자

학 번 : 2018-28513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7

1.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 이해 ····· 7

2. 연구방법 ····· 15

제 2 장 선행연구 및 상호저축은행 회계 관련 사항 ····· 17

제 1 절 선행연구 ····· 17

제 2 절 상호저축은행 회계 관련 사항 ····· 23

1.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규 ····· 23

2.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기관 ····· 25

3.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관 ····· 25

4.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기관 ····· 27

5.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 28

6. 최근 감독기관의 회계감사제도 개선 사항 ····· 29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 34

제 1 절 연구문제 ····· 34

1. 연구문제 선정 ····· 34
2. 연구의 분석틀 ····· 36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37
제 2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 37
1. 연구가설의 설정 ····· 37
2.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 38
제 3 절 변수의 선정 ····· 40
1. 설명변수 ····· 40
2. 종속변수 ····· 41
3. 통제변수 ····· 42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 43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 43
제 2 절 가설검증 결과 ····· 51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 5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55
제 2 절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 56
제 3 절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57
1.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 ····· 57
2. 내부감사의 개선방안 ····· 58
3. 외부감사의 개선방안 ····· 58

4. 회계감리 개선방안 ····· 59
5. 상호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종합 개선방안 ····· 59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60

참고문헌 ····· 62
Abstract ····· 65

표 목 차

〔표 1-1〕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 장·단점 비교 ····· 4

〔표 1-2〕 연도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 7

〔표 1-3〕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현황 ····· 8

〔표 1-4〕 연도별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 추이 ····· 10

〔표 1-5〕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지역별 현황 ····· 10

〔표 1-6〕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별 현황 ····· 11

〔표 1-7〕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 11

〔표 1-8〕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12

〔표 1-9〕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사모사채 보유현황 ·· 14

〔표 3-1〕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 장·단점 비교 ····· 35

〔표 3-2〕 가설,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현황 ····· 39

〔표 3-3〕 설명변수 현황 ····· 41

〔표 4-1〕 기술통계량 ····· 43

〔표 4-2〕 변수간 상관계수 현황 ····· 44

〔표 4-3〕 지역별 부실저축은행 발생 현황 ····· 48

〔표 4-4〕 지역별 후순위채권 발행 상호저축은행 중 부실

저축은행 발생 현황 ····· 49
〔표 4-5〕 지역별 유상증자 실시 상호저축은행 중 부실
저축은행 발생 현황 ····· 49
〔표 4-6〕 자산 규모별 부실저축은행 발생 현황 ····· 50
〔표 4-7〕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과 변수 정의 ····· 51
〔표 4-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52
〔표 4-9〕 통제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54

그 림 목 차

〔그림 1〕 정상저축은행 대출종류별 연체율 추이 ····· 13

〔그림 3〕 개념적 분석틀 ····· 36

〔그림 4-1〕 '08년~'17년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
개수 ····· 44
〔그림 4-2〕 '08년~'17년 후순위채권 발행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 개수 ····· 45
〔그림 4-3〕 '08년~'17년 유상증자 실시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 개수 ····· 45

〔그림 4-4〕 ‘08년~’17년 후순위채권 발행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발행 횟수 ····· 46
〔그림 4-5〕 ‘08년~’17년 유상증자 실시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실시 횟수 ····· 46
〔그림 4-6〕 ‘08년~’17년 후순위채권 발행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발행 규모 ····· 47
〔그림 4-7〕 ‘08년~’17년 유상증자 실시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증자 규모 ····· 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은 1972년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상호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 특히 2008년 들어 미국의 모기지 대출 부실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도 동반 침체되었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집중되었던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08개이던 상호저축은행이 2017년에는 79개로 감소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혹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대출자산의 부실화가 우려되면 감독당국 혹은 예금보험공사의 검사를 받게 된다. 감독당국 혹은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규모 손실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혹은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보위')에 부실금융기관[1] 지정을 건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의하고, 금융위 혹은 예보위는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대규모 부실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은 공통적으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PF대출[2] 등 부동산 관련 대출과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대출이 주요 부실 원인이었으며,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고금리 예금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3]가 이루어져 왔다. 또 다른 부실저축은행의 공통점은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을 은닉한 채 영업을 지속하여 오다가 감독기관의 검사를 통해 대규모 부실이 밝혀져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집중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원인보다 회계분식과 부실저축은행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회계분식은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진 등 내부이해관계자와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투자지표로 활용하는 외부이해관계자간에 정보 비대칭[4]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2)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주로 사회 경제적 재산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이뤄진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 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

3) 이시연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연구” 2011, 김용국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이 저축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7 등

4) 정보 비대칭(情報非對稱, Information asymmetry)은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말하며, 사람들이 보유하는

이해관계자간의 회계정보에 대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법과 회계분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저축은행 자본조달 방식과 감독기관의 개별 상호저축은행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부실저축은행 지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5]를 실시하거나 후순위채권[6]을 발행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를 통해 BIS비율[7]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대주주의 자금부담이 크고 상호저축은행의 배당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고금리로 발행하여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비용 부담은

정보의 분포에 편향이 있어, 경제 주체 사이에 정보 격차가 생기는 현상 또는 그러한 성질로 발생되는 효율적 자원배분의 왜곡을 의미한다.

5)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6) 후순위채권은 담보 없이 발행자의 일반 신용만으로 발행된 회사채이나 저축은행이 발행한 경우 감독당국 등에서 동 채권을 자본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권은 발행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되었을 때 자본과 유사하게 변제순위가 가장 후순위가 되고 대신 발행금리는 일반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외부투자자가 자본성격으로 투자함에 따른 손실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 주고 있다.

7)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증가하나 외부자금으로 대주주의 부담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용이한 측면이 있다.

〔표 1-1〕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 장·단점 비교표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 증가	보완자본 증가
장 점	BIS비율 근본적 개선	대주주 부담 없음
단 점	대주주 자금부담 저축은행의 배당부담	일정기간(상환기간 5년)만 BIS비율 개선 일반채권 대비 고금리 부담

이러한 자본조달 장단점을 고려하여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은 필요한 자본조달 방법을 선택하여 왔다.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유상증자의 방법을 택할 수 있고, 대주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회계분식을 한 상호저축은행이 있다면 자본 조달 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선 일반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특징적 지배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70% 수준이며, 이런 높은 지분율을 기반으로 대주주가 직·간접으로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는 경영현황 관련 정보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들을 내부이해관계자로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주주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도덕적 위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경영참여로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부이해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와 달리 상호저축은행이 공표한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재무제표 등에만 의존하여 경영상황을 판단하고 후순위채권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래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때에 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금번 연구의 목적에서와 같이 회계분식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을 정상저축은행 표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은 필요한 자금조달을 대주주와 상의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보다 외부이해관계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조달 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지 외부투자자를 통한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회계분식과의 관계 및 연관성을 연구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상호저축은행의 자금조달 방법과 정보 비대칭과의 연관성*

정보 비대칭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을 정보우위, 반대의 경우를 정보열위에 있다고 한다.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면 거래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때에 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하며, 이러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있다. 도덕적 해이[8]란 거래 성사 후 정보우위에 있는 거래주체가 은폐된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역선택은 거래시 정보열위에 있는 자가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8) Laffont and Martimort(2002:3)는 도덕적 해이를 감춰진 행동(hidden action)으로, 역선택을 감춰진 지식(hidden knowledge)으로도 명명하기도 한다. 이준구(2013:647, 663)는 역선택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으로 설명한다.

경우를 말한다.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조달을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발행이 가능한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는 경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관련 정보의 우위를 이용하여 자본조달 방식을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분식을 인지하고 있는 내부이해관계자는 자본조달 방식 결정시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향후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분식이 밝혀지기 전까지 영업을 지속하여 불법대출 등으로 이득을 취하고, 금감원 검사 등으로 대규모 분식회계가 발견되어 부실저축은행으로 결정시 그에 따른 피해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외부이해관계자는 공개된 재무제표를 통해서만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을 파악하는 정보열위에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회계분식된 자료에 기초해서 후순위채권 투자를 결정할 경우 투자 효율성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분식에 기망되어 비효율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참고 : 정보 비대칭 시장의 비효율성>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애컬러프는 중고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중고차시장에서 초기에는 정상자동차와 불량자동차가 매각을 위해 시장에 나오는데 비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매수자는 시장에 나온 자동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량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낮은 가격으로만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낮은 가격만 매수자가 제시할 경우,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온 정상자동차는 매각을 포기할 것이고, 중고차시장에는 불량자동차만 남게 된다. 이처럼 정보 비대칭 때문에 열등한 상품만 시장에 남고 이를 선택하게 되는 걸 역선택이라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 이해

2005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은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이 급증하였고,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 전반이 침체하자 부실화가 심화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13개이던 상호저축은행은 2017년에는 79개로 감소하였다.

〔표 1-2〕 연도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기초 회사수	감소			신설	기말 회사수
		계약이전 (P&A)	합병 (흡수합병)	파산		
2005년도	113	3	1		2	111
2006년도	111	1		1	1	110
2007년도	110	4			2	108
2008년도	108	2				106
2009년도	106	2			1	105
2010년도	105	1			1	105
2011년도	105	12			5	98
2012년도	98	11			6	93
2013년도	93	5	1		2	89
2014년도	89	4	8		3	80
2015년도	80	1				79
2016년도	79					79
2017년도	79					79

자료 : 예금보험공사 연도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특히, 20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주체를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금융지주사 등 국내금융회사가 계약이전을 주로 받았으나, 2013년 이후에는 외국계 금융사 및 대부업체 등이 인수주체로 참여하며 지배구조가 다원화되었고, 인수주체를 찾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가교저축은행 형태로 예솔, 예한별 등 8개의 상호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우선 계약이전하여 경영을 정상화한 후 꾸준히 인수주체 물색 및 다양한 매각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아래 〔표 1-3〕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들의 정리방식과 인수주체들을 보여주는 표이다.

〔표 1-3〕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 현황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계약이전방식	인수주체	정리후 은행명
1	삼화	2011-01-14	제3자	우리금융	우리금융
2	부산	2011-02-17	가교	IBK	예솔
3	대전	2011-02-17	가교	OK2	예나래
4	부산2	2011-02-19	제3자	대신	대신
5	중앙부산	2011-02-19	제3자		
6	도민	2011-02-23	제3자		
7	전주	2011-02-19	가교	삼호산업	예쓰
8	보해	2011-02-19	가교		
9	경은	2011-08-05	가교	IBK	예솔
10	프라임	2011-09-18	제3자	BS금융	비에스
11	파랑새	2011-09-18	제3자		
12	제일	2011-09-18	제3자	KB금융	KB
13	제일2	2011-09-18	제3자	하나금융	하나
14	에이스	2011-09-18	제3자		

	저축은행명	영업정지일	계약이전방식	인수주체	정리후 은행명
15	토마토	2011-09-18	제3자	신한금융	신한
16	솔로몬	2012-05-06	제3자	우리금융	우리금융
17	한국	2012-05-06	제3자	하나금융	하나
18	미래	2012-05-06	제3자	KC카드(친애)	친애
19	한주	2012-05-06	가교	OK	예나래
20	토마토2	2012-10-19	가교	예솔	IBK
21	진흥	2012-11-16	가교	신한금융	신한
22	경기	2012-12-28	가교	KB금융지	KB
23	W	2012-12-28	가교	한국투자	예성
24	서울	2013-02-15	가교	OK	예주
25	영남	2013-02-15	가교	IBK	IBK
26	신라	2013-04-12	가교	웰컴저축은행	예신
27	스마일	2013-11-01	제3자	오릭스	오릭스
28	한울	2013-12-27	제3자	페퍼저축은행	페퍼
29	해솔	2014-05-02	제3자	웰컴저축은행	웰컴
30	골든브릿지	2015-01-16	제3자	조은저축은행	조은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자산규모면에 있어서도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말 86.3조원까지 성장하였고, 2011년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15년 6월말에 40.2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회복 추세에 있다.

〔표 1-4〕 연도별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 추이

	'08.6말	'09.6말	'10.6말	'11.6말	'12.6말	'13.6말	'14.6말	'15.6말	'16.12말	'17.12말
자산 (조원)	63.5	74.8	86.3	69.8	50.6	43.8	41.8	40.2	52.3	57.6

※ 상호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법인이었으나 2016년부터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08~2017년까지 10년 자료를 대상으로 회계분식이 있었던 32개 부실저축은행과 현재 정상 영업중인 79개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은 2018년 6월말 79개로 총 63.8조원 자산을 보유 및 운용 중에 있으며, 2018년 1~6월 당기순이익은 5,415억원을 달성하였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53%인 42개가 영업하고 있다.

〔표 1-5〕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지역별 현황

(2018.6월말기준 단위: 개수, %, 억원)

구 분	수	BIS (%)	당기순이익 (억원)	연체율 (%)
서울	23	14.7	2,860	4.9
경기/인천	19	13.4	1.493	3.7
부산/울산/경남	12	15.2	404	3.6
대구/경북/강원	11	12.8	150	5.3
광주/전남/전북/제주	7	18.4	164	7.3
대전/충남/충북	7	14.9	344	3.6
합 계	79	14.5	5,415	4.5

자료: 예금보험공사

총자산이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상호저축은행은 SBI, OK, 한국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8개로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10% 수준이며, 총자산이 3천억원 이하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은 27개로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34.1% 수준이다.

〔표 1-6〕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산규모별 현황

(2018.6월말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수	BIS (%)	당기순이익 (억원)	연체율 (%)
2조원 초과	8	13.3	2,344	5.4
1조원 초과 2조원 이하	14	14.0	1,135	3.3
3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30	15.6	1,640	4.0
3천억원 이하	27	18.6	296	5.8
합 계	79	14.5	5,415	4.5

자료: 예금보험공사

2018년 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43%로 3월말(14.14%) 대비 0.29%p 상승하였다. 이는 4~6월간의 3,370억원 이익 및 일부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411억원 실시 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5.6%↑)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3.5%↑)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표 1-7〕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억원, %, %p)

구 분	'18.3월말 (A)	'18.6월말 (B)	증 감 (B-A)
BIS자기자본(a) 억원	73,152	77,227	4,075
위험가중자산(b) 억원	517,227	535,320	18,903
BIS자기자본비율(a/b) %	14.14	14.43	0.29

자료: 예금보험공사

2018년 6월말 자산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4.39%로 3월말의 4.40% 대비 0.01%p 하락하였으나 개선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동 시점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4.80%로 3월말의 4.81% 대비 소폭 개선(0.01%p↓)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의 연체율은 2018년 6월말 4.49%로 3월말의 4.52% 대비 소폭 개선(0.03%p↓)되었다.

[표 1-8]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 %p)

구 분		'18.3월말 (A)	'18.6월말 (B)	증 감 (B-A)
기업	연체여신(A)	13,413	13,951	478
	여신액(B)	306,403	318,111	11,708
	연체율(A/B)	**4.40**	**4.39**	**△0.01**
가계	연체여신(A)	10,513	10723	210
	여신액(B)	218717	223325	4608
	연체율(A/B)	**4.81**	**4.80**	**△0.01**
전체	연체여신(A)	24,123	24,786	663
	여신액(B)	533,352	551,971	18,619
	연체율(A/B)	**4.52**	**4.49**	**△0.03**

자료: 예금보험공사

가계대출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8년 6월말 담보대출 연체율은 3.20%로 3월말의 3.24% 대비 0.04%p 하락하였다. 동 시점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6.65%로 3월말의 6.55% 대비 0.10%p 상승하여 2017년 12월말 이후 악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가계 신용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신용대출증가율은 축소되는 반면, 연체규모는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림 1-1］ 정상저축은행 대출종류별 연체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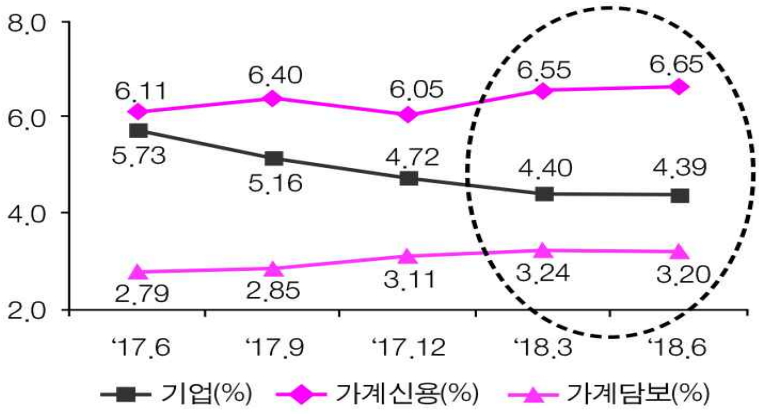

최근 상호저축은행 전체로는 순이익 및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구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 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하고, 자산은 16.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의 같은 기간 순이익 증가율은 △26.6%이고 자산은 13.9% 성장하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경기악화 등 수도권에 비해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임에 따라 향후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상호저축은행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수익원 발굴 및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6월말 상호저축은행업권의 사모사채 투자 규모는 1.61조원으로 법인대출 19.6조원의 8.21%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대체수익원 확보 등을 위해 법인대출을 확대해 왔으며, 이 중 사모사채 투자규모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말 상호저축은행 보유 사모사채의 평균만기는 4.4년으로 일반대출의 평균만기 3.1년 및 예금의 평균만기 1.3년에 비해 장기이며, 이에 따라 금리 상승시 조달 금리인 예금금리는 상승하나 사모사채 금리는 평균만기 만큼 지속되어 수익성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표 1-9] 정상 영업중인 상호저축은행 사모사채 보유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12월말		2017년 12월말		2018년 6월말	
	잔 액	1년전 대비	잔 액	1년전 대비	잔 액	1년전 대비
사모사채 잔액(A)	12,594	9% ↑	15,362	22% ↑	16,077	6% ↑
법인 대출액(B)	164,733	13% ↑	186,370	13% ↑	195,775	11% ↑
사모사채 비중(A/B)	7.6%		8.2%		8.2%	

자료: 예금보험공사

또한, 2017년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사모사채의 25%인 3,800억원이 투자적격등급의 최하위 등급인 BBB등급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등급 이하 및 무등급도 각각 14.0%인 2,200억원, 31.3%인 4,800억원 달하는 등 신용위험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사모사채가 전체 법인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편중리스크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시장금리 상승, 경기악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사모사채의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에 대비하고, 하위 신용등급의 편중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서 상호저축은행의 개요와 현황 그리고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식이 회계분식과의 상관관계 개연성에 기초하여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업권에 대한 전반적 정보 제공을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상호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는 회계분식 반영전 정확한 경영상태에 기초하여 유상증자 참여 등 자본조달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음에 비해 외부이해관계자는 공표된 경영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이때 공표된 경영자료가 회계분식된 자료인 경우 동 사항에 기초하여 투자의사 등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및 이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 즉 내부이해관계자의 자본 투자 손실 위험이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금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상호저축은행 회계 관련 사항 검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요인,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분식 원인 및 유형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분식 및 회계 투명성을 위한 노력은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핵심적 요인이기에 이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금번 연구에 필요한 적절한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등을 고려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감안하여 자본조달 방식과 회계분식 연관성 관련 연구가설을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자본조달 방법과 회계분식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는 등 구체화된 실증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가설과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증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초통계분석에 있어서는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및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간의 후순위채권 발행 횟수 및 유상증자 실시, 상호저축은행 규모·지역에 따른 부실화 비율 등의 비교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및 가설검증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식과 회계분식과의 연관성과 관련한 가설을 검증하고, 세부 내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어떠한 요인을 사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그 위험요인 관리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 내부·외부감사의 개선 방안, 회계감리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상호저축은행 회계 관련 사항

제 1 절 선행연구

금번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및 대책 관련 연구, 둘째, 정보 비대칭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조달 형태, 수익·비용대응 원칙과의 연관성 관련 연구, 셋째, 회계분식이 발생하는 원인, 회계분식의 영향 및 개선 방안 관련 연구 등이다.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관련 연구는 주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에 이르게 된 원인, 도산 예측 모형에 관한 사항이 주로 관련 되어 있다.

이시연(2011)은 상호저축은행 부실화 원인을 상호저축은행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제도적 요인 및 감독상 결함으로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집중화된 소유·지배구조, 자금조달의 불안정성 등에 기인해서 구조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할 유인이 계속 높아져 왔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내부통제가 미흡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순호(2011)는 미국의 상호저축기관(상호저축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총자산 규모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호저축기관의 수익성이 2006년까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관련 손실로 자기자본과 총자산규모가 상당 폭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기 후 상호저축기관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예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자금운용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 따

라 주택 모기지대출보다 소기업 및 소비자 대출, 유가증권 투자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김학건·박광우·오승곤(2016)은 상호저축은행 부실행태분석에서 부실저축은행의 경우, 건설 관련 대출과 부동산 PF대출이 정상저축은행에 비하여 부실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높은 지분율을 가진 최대주주가 정상저축은행에 비해서도 부실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많았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실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정상저축은행에 비해 부실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대주주가 과도한 지분율을 가질 경우 최대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경향이 강해져 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심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보 비대칭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본조달 형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주로 연구되었다.

양승권・이수욱(2012)은 기업소유구조가 정보 비대칭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연구 결과, 정보 비대칭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사적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지분율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영(2015)은 수익비용대응과 정보 비대칭에서 수익비용대응[9]이 적절할수록 정보 비대칭이 낮아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

9) 수익이 기록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비용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 가령 수익은 당기에 인식하고 비용은 차기에 인식하는 경우 당기의 이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고, 반대로 당기에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비용만 인식한 경우 당기의 이익을 과소계상할 수 있어, 수익에 동반되는 비용은 동일 기간에 인식되어야 한다.

면 수익비용대응이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비용대응이 훼손됨에 따라 이익지속성이 감소하고, 이익변동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Dichev and Tang 2008; Paek 2011a, 2011b). 투자자들은 적절하지 않은 수익비용대응을 미래 이익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해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정보유용성의 감소는 정보 비대칭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할수록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위험은 감소하고 정보유용성의 증가로 인해 기업과 시장참여자간의 정보 비대칭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법인 5,621개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할수록 정보 비대칭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익비용대응이 적절할수록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위험은 감소하고 정보유용성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익의 질이 높을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향상된다는 IFRS(2010)의 주장을 지지하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소현·안승철·권순용(2016)은 한국증권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 자본조달형태와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의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과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보 비대칭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본구조 변경방법과 목표자본구조를 향한 조정속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 비대칭의 차이가 목표자본구조를 향한 자본구조 변경과 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일관성 있게 지지되지는 않았고, 가설의 내용에 따라 일부분만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목표부채비율이 실제부채비율 보다 높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 비대칭이 높은 기업들이 목표자본구조를 향해 부채비율을 높이려고 할 때, 발행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회사채 발행보다 대부분 차입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비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정보 비대칭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기업들의 경우 목표자본구조를 향해 자본구조 변경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 구조 변경이

용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보 비대칭의 차이를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자본구조 변경에 조정속도를 연결하여 살펴본 결과는 정보 비대칭 정도와 관련이 없었다.

조영민(2017)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자사주 매입의 부의 효과에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재무 보고 내용과 공개 횟수 등을 통해 측정한 정보 비대칭 정도에 따른 자사주 매입의 부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일변량,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 정보 비대칭 정도에 따라 기업 간의 자사주 매입의 부의 효과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비대칭의 정도가 심한 불투명 기업과 그렇지 않은 투명 기업에 간에 자사주 매입 공시 수익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비율, 주식수익률 변동성, 기업 규모 등 기존에 정보 비대칭 측정에 사용되던 변수들이 자사주 매입의 부의 효과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업 재무 보고의 질을 통해 측정한 정보 비대칭이 가치평가오류에 따른 자사주 매입의 부의 효과를 유효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분식회계와 내부지배구조와의 연관성 및 분식회계의 원인, 종류, 개선방안 등 총체적 분석과 시사점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김창수, 천미림(2009)은 분식회계기업의 내부지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내부지배구조 측면을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경영참여 및 사외이사의 활동성이 분식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분식기업과 정상기업의 내부지배구조의 차이가 분식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배구조 개선방향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분식회계 기업일수록 지배주주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외

형적인 지배구조의 변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경영진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감시를 통한 내부적인 지배구조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천현(2014)은 분식회계의 실태와 효율적인 제재방안에서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첫째,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경우를 지적하였다. 이는 과거 ㈜기아자동차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주요원인이었다. 둘째, 회계장부의 실적 및 재무상태가 불량하게 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금융기관은 적자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금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주식시장에서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 만큼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 감리활동, 금융관행 등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여건과 인식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으로 ① 포상제도, 제보자 보호제도 등 제보활성화를 추진한 필요가 있고, ② 회계분식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 적극 활용 및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관리제도 활용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③ 집단소송제도의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제재 강화 및 다양화와 ④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을 명학화와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정 정비 등 형벌규정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위경우, 박종성, 박래수(2009)는 감독기관의 분식회계 적발 노력에 대한 게임모형을 활용한 연구에서 감독기관에 의한 기업 분식회계 적발노력과 분식기업과 감독기관이 함께 담합 가능성 등을 베이지안 내쉬균형[10] 해를 통해 분석하고 해당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예를 이용한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감독기관이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10) 내쉬균형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을 뜻한다. 각 경기자가 이러한 전략을 쓰면 어느 순간 '내쉬균형(Nash condition)이 성립된다. 내쉬균형은 상대방이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자신만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는 조건이다. 경기자가 모두 자신의 선택을 바꿀 유인이 없도록 만드는 조건인 것이다.

중요도를 같게 두는 중립적 정책 목표를 전제로, 수치분석 등을 활용한 베이지안 내쉬균형을 활용하여 최적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균형에서 기업가치 변동성, 투자자의 인내수준, 감독기관에 대한 처벌수준 및 회계분식기업의 분포에 의한 회계분식규모, 감독기관의 노력수준 및 사회적 후생 등이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치의 변동성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인내수준은 감독기관의 최적 적발노력에 부(-)의 영향을, 반면 회계분식 미적발시 감독기관에 대한 처벌수준과 경제내 분식회계기업의 비중 등은 감독기관의 최적 노력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독기관과 기업이 담합하는 것이 최적 균형일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인내수준과 감독기관의 처벌규모에 따라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업과의 담합을 회피하면서 감독기관에 의한 최적 적발노력을 이끌어 최적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한계로는 회계감사인과 그 역할을 감안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감독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회계분식 방지노력의 가능성을 균형모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

김문철, 안성희(2015) 우회상장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실패에서 우회상장을 통해 주식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우회상장 이전에 저지른 회계분식으로 인해 상장폐지됨에 따라 수많은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회계부정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회계법인이 감사위험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실증검사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증권 선물위원회는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실패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3년간의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동 연구는 내부경영진 못지 않게 회계법인도 분식회계기업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절 상호저축은행 회계 관련 사항[11)]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 및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에 비해 정보 비대칭 즉 정보 열위에 있는 외부이해관계자의 회계투명성은 훼손될 수 있음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회계투명성 확보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회계처리 법규, 회계처리 제정기관,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기관,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최근 감독기관의 회계감사제도 개선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규

상호저축은행의 일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는 개별 법규에서 각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회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관한 법규에는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법규가 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제와 추가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일반적 규제법규

일반적 규제법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이 있다.

11) 이진효(2017)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함

2) 추가적 규제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자기자본(동법 제2조 제4호)[12] ·자본금(동법 제5조) 규정, 지급준비자산의 보유(동법 제15조) 규정, 차입의 제한(동법 제17조)·여유금의 운용방법(동법 제18조)·이익금의 처리(동법 제19조) 규정 등을 두고 있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은 감독 및 업무운용 관해 법령이나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야 한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조).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에 관한 자기자본의 범위 등 (동 감독규정 제4조의 2), 자본 관련 자본금의 증액 등(동 감독규정 제18조의 3), 재무제표 작성 관련 연결재무제표 작성이다. 지급준비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상호저축은행(동 감독규정 제22조의 6 지급준비자산의 보유(동 감독규정 제24조), 준비금 관련하여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동 감독규정 제25조), 차입한도 등(동 감독규정 제26조), 여유자금 운영 관련 여유금의 운용방법(동 감독규정 제28조)·회계기준 등(동 감독규정 제37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동 감독규정 제38조)이 있다. 상호저축은행 충당금 설정과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자산(동 감독규정 제39조), 상호저축은행 유동성 관련 유동성비율(동 감독규정 제40조의 3)·건전성비율(동 감독규정 제44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동 감독규정 제57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

12)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근거한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합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4호)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동 시행세칙 제1조).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회계연도(동 시행세칙 제25조)·회계단위(동 시행세칙 제26조)·계정과목(동 시행세칙 제28조)·회계처리 세부기준 등(동 시행세칙 제34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회계처리기준의 제정기관

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외감법 제13조 제1항), 현실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하고 있다(외감법 제13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다항). 다만, 금융위는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국회계기준원에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배열순서, 및 계정과목의 종류 등은 금감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3.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기관

1)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호저축은행

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제2항).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결산 및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이유[13]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14, 동법 시행령 제20조).

2) 금융감독원장

개별상호저축은행은 업무보고서를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금융감독원장이 감사업무

---

1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0조
1. 최근 3년간 불법·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임권고(해당 임원이 직원이었을 당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면직요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의2에 따라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計上)하거나 손실금을 과소 계상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7.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감사를 해임한 경우. 다만, 감사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사를 해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한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미만인 경우

또는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5 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1항),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재산이나 업무에 관한 보고, 관계자의 의견 진술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2항), 또한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감사로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현황 및 건전성과 관련있는 자료의 제출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법 제23조 제4항).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방법, 회계 등에 관해 지도한다(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기업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정하는 내용 및 사항에 근거하여 상호저축은행 회계처리에 대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다(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4조 제2항).

4.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기관

1) 내부감사기관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내부감사기관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상근감

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으며, 이러한 감사권한에 대해 회계감사 권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한다.

2) 외부감사기관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독립된 지위에 있는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개시된 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결정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감사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회계법인에 등록된 감사반이 있는데,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이 될 수 없고,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후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상호저축은행·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1) 내부감사의 문제점

상호저축은행의 내부감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에 설치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에 의해 회계감사가 진행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만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이사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실효성 즉 일반적으로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한 사외이사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견상 회계감사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이사회로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외부감사의 문제점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는 경영진에 의하여 작성되고 외부감사인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공시되고 있다. 외견상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외부감사인의 자유선임제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의 치열한 회계감사 수주경쟁 및 저가 수주에 따른 부작용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오히려 감사대상인 상호저축은행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감사환경이 초래되고 있다.

6. 최근 감독기관의 회계감사제도 개선 사항(2017년 1월 23일)

금감원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종합대책은 1)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2) 감사품질 제고, 3)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로 구성되어 있다.

1)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내부관리 강화

상호저축은행의 내부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부정 발견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무가를 선임하여 조사·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감사인에 동시제출토록 하여 내부감사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가 내부감사의 조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였

다. 또한 회사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계부정 적발에 가장 효과적인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신고자에 불이익 대우를 한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도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기존의 상근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직접 이사회·감사 및 주주에게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로 규정된 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2) 감사품질 제고

기존에는 감사인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관리종목, 부채비율 과다,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자유선임으로 감사인이 회사 눈치를 보게 되고 이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독립성이 부족하여 감사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법인을 선택하여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사유를 ①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직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②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로 추가하였다. 또한 핵심감사제(KAM)[14]을 확대 도입하였다. 그 밖에 비감사용역(컨설팅 등)을 수임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감사중인 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금지' 대상을 선진국 수준[15]과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또한 일정

14)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 감사인-경영진간 협의를 통해 유의적인 감사인 주의가 요구되는 주요 감사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

15)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를 추가 : ①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②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③경영자의 역할이나 의가결정을 수반하는 업무

수준 이상의 감사시간 확보로 정상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표준 감사시간[16]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충분한 감사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감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감원에서 모든 상장회사에[17] 대해서 매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를 실시하고, 특히 감사인 지정(직권지정/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주기로 감리를 실시할 것이다. 분식회계, 부실감사와 관련한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신분 제재를 강화하고 회사·감사인·개인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하였다.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분식 규모가 큰 경우[18] 유기징역 5년 이상 등 가중처벌을 강화하였다.

<참고 :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사례 관련 사항>

1) 회계부정사건의 개요

2011년 2월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전구에 4개 상호저축은행(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를 가지고 있는 부산지역 제1의 상호저축은행이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

16) 회사 자산규모별, 업종별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투입시간을 표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평균값을 산출

17) 총 1,958개('16년 12월말 기준,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

18) 회계분식으로 이익 10% 이상 흑자 전환 또는 20%이상 이익 변동 등

개발 사업을 하기위해 120개의 페이퍼 컴퍼니(특수목적회사 SPC)[19]를 설립하고 부동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SPC 대표이사를 친인척으로 임명하고, 지배하면서 4조 5,942억원의 불법대출을 하였고, 흑자분식을 통해 이익배당금도 수령하였다.

2) 분식회계 방법

부산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연체중인 특수목적회사(SPC)에 신규대출로 채무변제 및 대출금의 연체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고, 부실화된 자산을 제거하고, 이자수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세부적으로, 신규 차명대출금을 이용해 구 차명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증가한 신규 대출금으로 원금상환 보다는 주로 기존 대출금의 이자 갚기에 사용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부산저축은행은 부실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 없이 BIS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우량저축은행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3) 외부감사 결과

2009년 상호저축은행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은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고, 부산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중앙부산은행과 전주저축은행도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고, 부산2저축은행도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으며, 이들 중 분식회계를 적발한 회계법인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법인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대손충당금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불 수 있다.

---

19)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유한회사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또한 스스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위에서 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4) 회계부정관계자에 대한 처벌

부산저축은행의 2009년~2010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임원 12명에 대해 불법대출 6조 315억원, 분식회계 3조 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 780억원에 이르는 금융사기가 적발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ⅰ)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위반(배임), (ⅱ) 부실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관련 법률' 위반(배임), (ⅲ) 주식·부동산 구입 관련 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의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ⅳ) 분식회계에 의한 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다[20].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예금자의 돈을 잘못 운용하며 분식회계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21]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는 징역 12년형을, 부회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22]

---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31. 선고 2011고합1341, 2012고합 112, 2012고합368, 2011고합1429, 2012고합111, 2011고합1486, 2011고합1565,

21)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노 832 판결

22)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에 대한 원심의 배임행위에 따른 손해액이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취지로 판단함에 따라 원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하였으나(대법원 2013. 1. 24.선고 2012 도10629 판결), 파기환송심은 "상호저축은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보아 원심과 동일한 선고를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3 노 424 판결),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련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 도 6394 판결).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1. 연구문제 선정

본 연구의 문제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식과 부실저축은행의 회계분식과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있다.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기업, 가계에 대출함으로써 운영되고 있다. 연구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은 공통적으로 감독당국이 해당 상호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회계분식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숨겨졌던 부실이 일순간에 드러나면서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정상 영업이 종결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자본을 증가시켜 왔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일반 국민 등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감독당국의 규정에 따라 자본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증가 중 어느 것이 적절한가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상증자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를 통해 BIS비율을 개선할 수 있으나, 대주주의 자금부담이 클 수 있고 상호저축은행의 배당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고금리로 발행하여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면이 있으나 외부자금으로 대주주의 부담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용이한 측면이 있다.

〔표 3-1〕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권 발행 장·단점 비교표

	유상증자	후순위채권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	기본자본 증가	보완자본 증가
장 점	BIS비율 근본적 개선	대주주 부담 없음
단 점	대주주 자금부담 저축은행의 배당부담	일정기간(상환기간 5년)만 BIS비율 개선 일반채권 대비 고금리 부담

이러한 자본조달 장·단점을 검토하여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은 필요 자본 조달방법을 결정하여 왔다. 개별 저축은행은 유상증자의 방법을 택할 수 있고, 대주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런데 회계분식을 한 상호저축은행이 있다고 하면 자본조달 형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선 일반은행 등 금융기관과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70% 수준이며, 이런 높은 지분율을 기초로 대주주가 직·간접으로 상호저축은행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상호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는 경영현황 관련 정보수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주인-대리인 이론에서는 권한을 위임하는 주주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대리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덕적 위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경영참여로 이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부이해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 경영진 및 대주주와 달리 상호저축은행이 공표한 회계분식된 재무제표에 의존하여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경우 회계분식된 경영자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후순위채권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비효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상호저축은행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거래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때에 비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서두의 금번 연구 목적에서 밝힌바와 같이 회계분식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상저축은행으로 위장한 경우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은 필요한 자금 조달을 대주주와 상의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보다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조달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지 외부투자자를 통해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분식회계와의 관계 및 연관성을 연구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분석틀

상호저축은행 자본조달 방식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상환기간(5년), 상장기업 회계감리 계약기간(3~5년) 등을 고려하여 5년간 누적 자본조달 방법이 감독당국의 회계분식 발견에 따른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지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 개념적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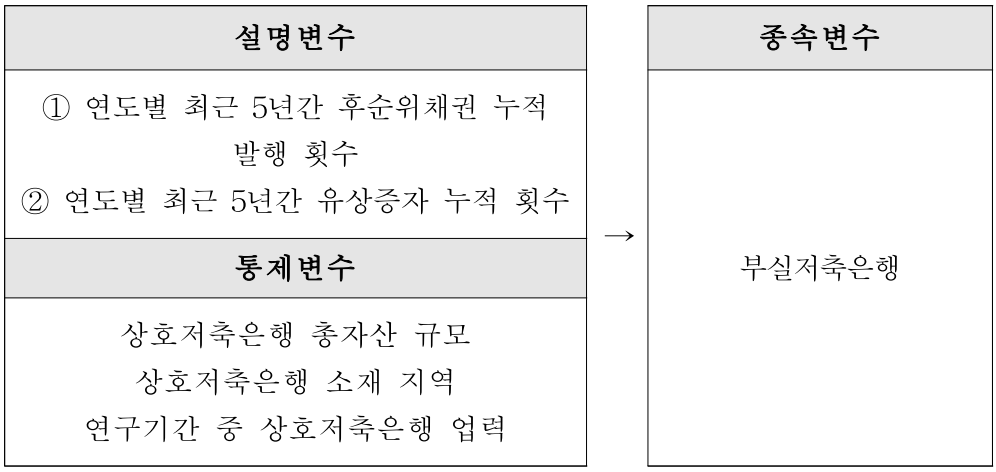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상호저축은행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를 통해 매년 공시되는 상호저축은행 사업보고서 중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을 활용한다. 재무제표와 주석사항은 연도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후순위채 조달 횟수, 유상증자 횟수 등을 활용한다. 분석자료는 32개 부실저축은행(회계분식 적발)과 79개 정상저축은행의 2008~2017년의 10년 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단위는 연간 잔액 및 개별 연도별 5년간 누적 후순위채권 발행 및 유상증자 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가설과 분석모형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식과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분식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본조달방식으로부터 2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들 가설 중 어떤 자본조달 방식이 상호저축은행 회계분식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전자공시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항목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들은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PF대출로 대표되는 고위험 부동산관련 대출 편중과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능력 부족 및 대주주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미흡 등이 주요 부실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정보 비대칭과 관련하여서는 수익비용대응원칙이 훼손되는 경우 불확실성 증가로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중요하였고, 자본조달 형태와 조정속도

등에서는 정보 비대칭 영향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내부지배구조와의 연관성 및 분식회계의 원인, 종류, 개선방안 등 총체적 분석과 시사점 등이 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한 상호저축은행 자본조달 방법과 회계분식과 관련된 가설 2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설1〕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설2〕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실시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별 설명변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 사업보고서의 자료 중 관련 회계 계정을 활용하여 설명변수의 값을 구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수와 연관성을 분석한다.

2.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모형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통해 연도별 후순위채 발행 여부, 자기자본 증자 여부 등 자본 변동 사항을 확인한다. 개별 연도별 최근 5년간 자본 변동 사항과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지정 값을 구분하여 그 값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3-2] 가설, 설명변수 및 종속변수 현황

구 분	설명변수	종속변수
<가설1>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	부실저축은행
<가설2>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실시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횟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분형 척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가 측정될 때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하는지 여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정상저축은행과 회계분식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부실저축은행으로 구분되는 이분형 척도에 해당함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X)를 이용하여 예측한 Y값은 E(Y X)이며, 종속변수 (Y)가 이산변수이면 즉 E(Y X)는 확률 개념을 가지게 되므로 E(Y X)는 X에 의한 사건 발생 확률 p로써 즉 p(X)로 나타내 진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K개 독립변수를 가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으로 아래와 같다.

$$E(YX) = p(X) = \frac{\exp(\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k X_k}{1 + \exp(\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k X_k}$$

이러한 종속변수 p(X)는 0부터 1의 값을 취하는 확률값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와 선형함수로 표시될 수 없으며 S자 곡선인 로지스틱 함수로 표시된다.

제 3 절 변수의 선정

1. 설명변수

상호저축은행은 필요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와 함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를 통하여 BIS비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반면, 대주주의 자금부담이 크고 상호저축은행의 배당 부담 증가가 있다. 이에 비해 후순위채권 발행은 일반 예금 등 일반적 자금조달에 비해 추가금리 부담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나 외부 자금으로 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필요에 따라 자본조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연구목적에서도 밝혔듯이 경영진 및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자본조달 방법의 선택 대안에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선택된 자본조달 방식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과 동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지정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자본조달 방식을 후순위채권 발행 여부, 유상증자 여부로 구분하고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상환기간(5년), 상장기업 회계감리 계약기간(3~5년) 등을 고려하여 5년간 누적 자본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감독당국의 회계분식 발견에 따른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지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3-3〕 설명변수 현황

자본조달 방식	자본조달 방식 결정 사유
후순위채권	①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자본 확충 실시 ② 회계분식한 상호저축은행이 추가적 영업 연장을 위해 유상증자 대신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후순위채권 발행 등을 통해 부실발생시 손실 위험을 외부투자자에게 전가시키며 자본 확충 실시
유상증자	①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증가시 영업확대를 통해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동 이익을 외부투자자와 공유하지 않고 독점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실시 ② 회계분식한 상호저축은행이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평판 등으로 후순위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확충이 필요하면 유상증자 실시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저축은행 지정 여부 즉, 부실저축은행과 정상저축은행을 결과값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부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혹은 예금보험공사 검사결과 회계분식이 적발되고 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이다. 부실저축은행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 모두 회계분식 규모가 상당해서 수년간 회계분식이 이루어져 왔다. 부실저축은행은 금융

위 혹은 예보위에 의해 지정되는데 금융위 혹은 예보위는 금융감독원 혹은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포함)을 내린다. 일정기간 이내에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에 정리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최소비용 검증을 거쳐 금융위에 정리방안을 제시한다. 이때 금융위가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계약이전 방식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상호저축은행이나 가교저축은행에 출연 등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에 대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한 후 정리 절차를 마무리한다.

3. 통제변수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는 상호저축은행 자산 규모, 상호저축은행 소재 지역, 연구기간(2008년~2017년) 중 영업기간을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상호저축은행 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고 '대마불사'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하여도 이를 믿고 외부이해관계자가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으로는 서울 등 특정지역의 상호저축은행이 지방저축은행보다 인지도가 높아 이를 기초로 해당지역 상호저축은행이 막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하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간(2008년~2017년) 중 영업기간에 따라 영업기간이 짧을수록 영업기간이 긴 상호저축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어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제 4 장 실증 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표 4-1〕 기술통계량

변 수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설명변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	895	0.2100	0.5561	0	3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횟수	895	0.4335	0.8218	0	4
종속변수	부실저축은행	895	0.0357	0.1857	0	1

주) 종속변수인 부실화여부: 정상저축은행은 0값을, 부실저축은행은 1값을 부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설명변수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횟수의 평균은 각각 0.2100번과 0.4335번이다.

설명변수들의 최소값은 0인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 기간 동안 후순위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가 없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자료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는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횟수가 각각 0.5561과 0.8218이다.

〔표 4-2〕 변수간 상관계수 현황

	후순위채권 발행 횟수	유상증자 횟수	부실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 횟수	1	-0.0037	0.2953
유상증자 횟수	-0.0037	1	0.0522
부실저축은행	0.2953	0.0522	1

상기 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상호간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설명변수 중 후순위채권 발행과 종속변수인 부실저축은행 여부(정상저축은행은 0값, 부실저축은행은 1값)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상증자 실시는 부실저축은행 여부(정상저축은행은 0값, 부실저축은행은 1값)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실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111개 상호저축은행이 있었으며, 그 중 79개사가 정상영업중이고 32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금감원 검사에서 모두 분식회계가 밝혀졌고 이에 따라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4-1〕 '08년~'17년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 개수

(단위 : 개수)

후순위채권 발행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32개 상호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고, 그 중 9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영업중이고 23개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4-2] '08년~'17년 후순위채권 발행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 개수

(단위 :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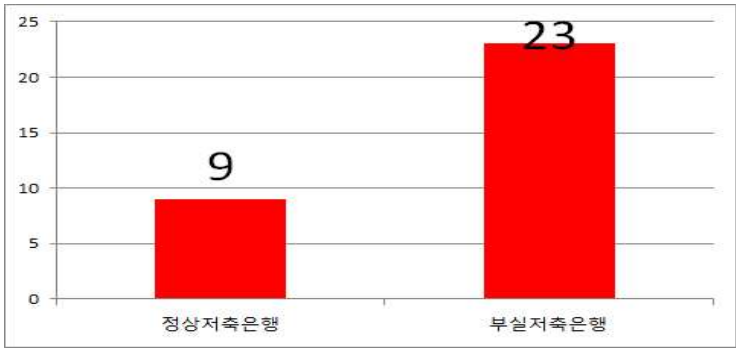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46개 상호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 중 34개 상호저축은행이 정상영업중이고 12개 상호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4-3] '08년~'17년 유상증자 실시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 개수

(단위 :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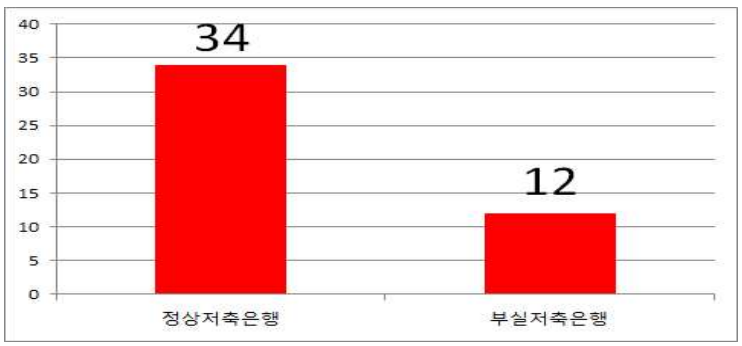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32개 상호저축은행은 총 49회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고, 정상영업중인 9개 상호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12회 발행하여,

평균 1.33회 발행하였고,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23개 상호저축은행이 37회 발행하여 평균 1.61회 발행하였다.

[그림 4-4] '08년~'17년 후순위채권 발행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발행 횟수

(단위 :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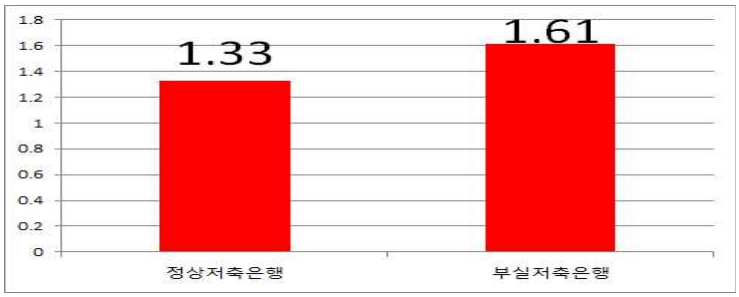

유상증자를 실시한 46개 상호저축은행은 총 93회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정상영업중인 34개 상호저축은행이 71회로 평균 2.08회 실시하였고,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12개 상호저축은행이 22회 실시하여 평균 1.83회 실시하였다.

[그림 4-5] '08년~'17년 유상증자 실시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실시 횟수

(단위 :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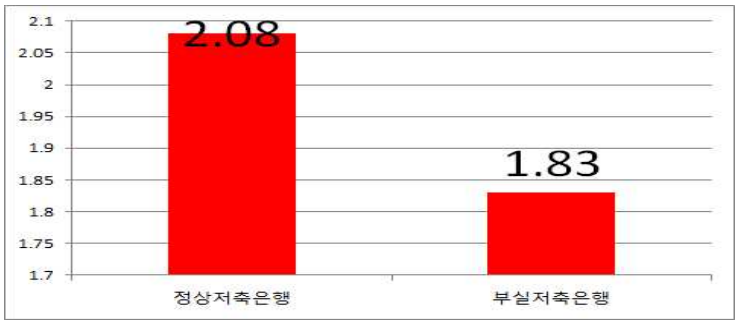

연구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후순위채권 규모는 총 1조 169억원이며, 정상영업중인 9개 상호저축은행이 2,109억원으로 평균 234억원이며,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23개 상호저축은행이 8,060억원으로 평균 350억원이다.

〔그림 4-6〕 '08년~'17년 후순위채권 발행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발행 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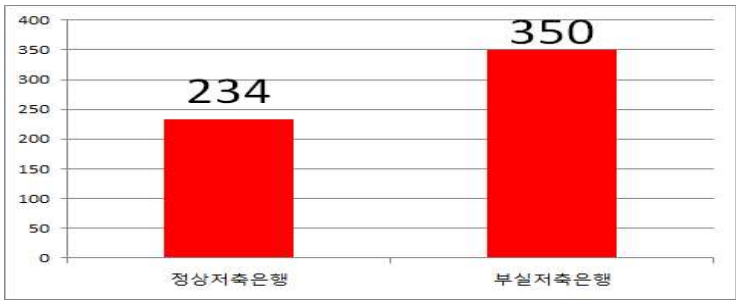

동 연구 대상 기간 중 유상증자 규모는 총 3조 5,756억원이며, 정상영업중인 34개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규모가 2조 7,576억원 평균 811억원이며,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12개 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규모가 8,180억원으로 평균 681억원이다.

〔그림 4-7〕 '08년~'17년 유상증자 실시 정상저축은행과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증자 규모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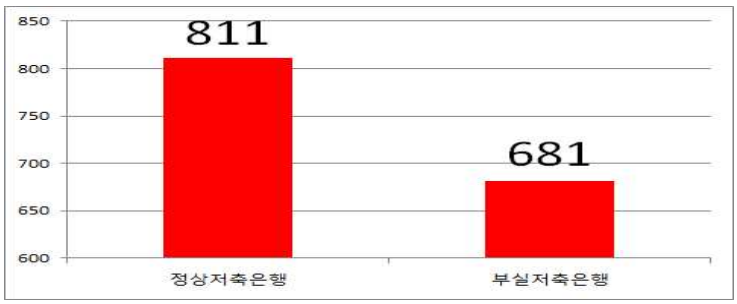

후순위채권 발행시기는 총 49회 중 2009년 21회, 2010년 15회로 두 연도에 약 73.4%가 집중적으로 발행된 반면 유상증자는 총 71회 중 2010년에 15회,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3회, 2009년과 2013년에 12회, 2014년에 11회 등 연구 대상 기간에 고르게 분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은 25개 상호저축은행 중 10개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경기/인천은 24개 상호저축은행 중 5개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울산/경남은 16개 상호저축은행 중 6개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기타 지역은 36개 상호저축은행 중 11개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표 4-3〕 지역별 부실저축은행 발생 현황

	부실저축은행 ①	지역별 저축은행 ②	부실화비율 ③=①/②
서울	10	33	30.30%
경기/인천	5	24	20.83%
부산/울산/경남	6	18	33.33%
대구/경북/강원	1	12	8.33%
광주/전남/전북/제주	8	15	53.33%
대전/충남/충북	2	9	22.22%
합 계	32	111	28.82%

서울지역 상호저축은행 중 총 15개사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9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경기/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은 총 5개사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그 중 3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은 6개사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모두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기타 지역은 6개사사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5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표 4-4〕 지역별 후순위채권 발행 상호저축은행 중 부실저축은행 발생 현황

	부실저축은행 ①	지역별 후순위채권 발행 저축은행 ②	부실화비율 ③=①/②
서울	9	15	60.00%
경기/인천	3	5	60.00%
부산/울산/경남	6	6	100.00%
대구/경북/강원	1	1	100.00%
광주/전남/전북/제주	4	4	100.00%
대전/충남/충북	0	1	0%
합 계	23	32	71.87%

서울지역 상호저축은행 중 총 15개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4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경기/인천지역 상호저축은행은 총 8개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2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은 7개사가 유상증자를 실사하였으며 2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기타 지역은 16개사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4개사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표 4-5〕 지역별 유상증자 실시 상호저축은행 중 부실저축은행 발생 현황

	부실저축은행 ①	지역별 유상증자 실시 저축은행 ②	부실화비율 ③=①/②
서울	4	15	26.66%
경기/인천	2	8	25.00%
부산/울산/경남	2	7	28.57%
대구/경북/강원	0	6	0%
광주/전남/전북/제주	3	7	42.85%
대전/충남/충북	1	3	33.33%
합 계	12	46	26.08%

상호저축은행 규모 면에서는 2조원이상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12개 중

9개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고 2조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99개 중 23개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었다.

[표 4-6] 자산 규모별 부실저축은행 발생 현황

	부실저축은행 ①	상호저축은행 ②	부실화비율 ③=①/②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호저축은행	9	12	75.00%
자산 2조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23	99	23.23%
합 계	32	111	28.57%

금번 연구가설 [가설1], [가설2] 와 관련된 기초통계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가설1]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가설2]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실시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감소한다.

연구대상 기간(2008년~2017년) 동안,

① 32개 상호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이 중 75.0%인 24개사가 부실저축은행이 되었고,

② 46개 상호저축은행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 중 73.9%인 34개사가 정상저축은행으로 여전히 영업중이고,

③ 32개 후순위채권 발행 상호저축은행 중 부실저축은행의 평균 발행 횟수는 1.61회로 정상저축은행 1.33회로 0.28회 더 많다.

④ 46개 유상증자 실시 상호저축은행 중 정상저축은행의 평균 증자 횟수는 2.08회로 부실저축은행 1.83회로 0.20회 더 많다.

⑤ 상호저축은행업권 전체 후순위채권 발행 규모는 1조 169억원이며, 부실저축은행 1회 평균 발행규모는 350억원으로 정상저축은행 1회 평균 234억원 보다 116억원 더 많다.

⑥ 상호저축은행업권 전체 유상증자 규모는 2조 7,576억원이며, 정상저축은행 1회 평균 규모는 811억원으로 부실저축은행 1회 평균 681억원 보다 130억원 더 많다.

⑦ 지역별로 보면, 후순위채권 발행 상호저축은행 중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 모두 부실화가 되었다.

⑧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호저축은행 12개 중 9개가 부실화되었다.

제 2 절 가설검증 결과

[표 4-7]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명과 변수정의

변수		정의
설명변수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
	유상증자 누적 횟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횟수
종속변수: 부실저축은행		정상저축은행 그룹(79개, 0값) 부실저축은행 그룹(32개, 1값)

설명변수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상 회계계정(자본금, 후순위채권 등) 항목 수치를 인용하여 횟수를 산출하였고, 종속변수는 정상저축은행 또는 부실저축은행으로 분류되는 이분형 척도로 측정되어서 종속변수 값이 0과 1사이의 값을 갖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부실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였다.

[표 4-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계수(B*)	유의수준(p)	Exp(B)**
설명변수	연도별 5년 누적 후순위채권 발행 횟수	0.5693	0.038	1.7670
	연도별 5년 누적 유사증자 횟수	-0.2382	0.361	0.7880
통제변수	총자산	0.0008	0.002	1.0008

* (+)이면 변수값이 커질수록 부실저축은행 그룹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면 정상저축은행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 정상 저축은행에 속할 확률 대비 부실 저축은행에 속할 확률의 비율로써 설명변수 값이 x만큼 커지면 부실저축은행에 속할 확률이 $Exp(B)^x$ 배 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설명변수 2개 요인 중 연도별 5년 누적 후순위채권 발행 횟수는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 지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도별 5년 누적 유상증자 횟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설1>은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두 변수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즉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

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지지해 주고 있다. <가설2>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유상증자 누적 실시 횟수가 증가하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설정하였는데, 통계적 분석결과, 두 변수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즉 동 가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유상증자 후에 부실저축은행이 되는 사례가 다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회계분식 등으로 후순위채권 발행을 원하나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동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후순위채권 발행이 어려워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 영업기간을 연장하다 결국에는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는 사례도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로는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규모와 영업 지역, 연구대상 기간 중 영업기간을 변수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총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시장에서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상호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후순위채권 발행 성공 및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여 실제로는 자산 규모와 후순위채권 발행 후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영업 지역은 서울 등 대도시인 경우 자산 규모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비해 인지도가 높고 이에 근거해 시장에서 회계분식을 한 경우에도 후순위채권 발행이 성공하고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서울 등 대도시지역이 별도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연구대상 기간(2008년~2017년) 사이에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간 역시 기간과 후순위채권 발행 및 감도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이 지정되는 것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통제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계수(B*)	유의수준(p)	Exp(B)**
통제변수(지역)	강원	2.4341	0.059	11.4055
	경기	-0.6945	0.447	0.4993
	경남	1.0340	0.385	2.8122
	경북	0	해당사항 없음	
	광주	0	해당사항 없음	
	대구	0	해당사항 없음	
	대전	2.5672	0.055	13.0292
	부산	0.9996	0.158	2.7171
	인천	1.0641	0.175	2.8982
	제주	2.9956	0.055	19.9973
	충북	0	해당사항 없음	
	충남	1.2760	0.285	3.5822
통제변수(업력)	1년	0	해당사항 없음	
	2년	-1.0176	0.436	0.3614
	3년	0	해당사항 없음	
	4년	1.3696	0.213	3.9337
	5년	1.1031	0.330	3.0134
	6년	1.2429	0.279	3.4656
	7년	-0.0295	0.984	0.9709
	8년	0	해당사항 없음	
	9년	0	해당사항 없음	
	10년	0	해당사항 없음	

* (+)이면 변수값이 커질수록 부실저축은행 그룹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면 정상 저축은행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 정상 저축은행에 속할 확률 대비 부실 저축은행에 속할 확률의 비율로써 설명변수 값이 x 만큼 커지면 부실저축은행에 속할 확률이 $Exp(B)^x$ 배 됨을 의미한다.

※ 통제변수 지역은 서울을 기준으로 각 지역을 비교함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법과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 지정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상호저축은행의 사업보고서상의 재무제표와 주석사항 등을 기초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자금조달 방식 중 2개 방식을 가설로 설정하고 동 가설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1개 가설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동 가설을 채택하였다. 가설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상호저축은행은 자본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를 통해 자본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대주주의 자금부담이 크고 상호저축은행의 배당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고금리로 발행하여 상호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비용 부담은 증가하나 외부자금으로 대주주의 부담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즉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 발행의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개별 상호저축은행에 적합한 자본조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실대출이 증가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한 상호저축은행은 어떤 자본조달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 경영진과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자본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외부이해관계자는 경영진 및 주주와는 달리 상호저축은행 경영현황정보에 상대적 정보 부족으로 불완전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즉 경영진 및 주주는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험을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전가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연도별 최근 5년간 후순위채권 누적 발행 횟수가 증가할 때,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

로 지정될 가능성도 함께 증가하였다. 즉 회계분식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자본조달 방식을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결정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연장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저축은행 지정 등에 따른 손실은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전가시킨 사실이 실증 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제 2 절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

그 동안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일반 저축예금보다 2~3% 높은 금리로 일반 국민의 주요 투자처가 되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호저축은행이 회계분식 등을 통해 건전한 저축은행인 것처럼 홍보하며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기에 외부이해관계자는 동 상호저축은행이 감독기관 검사에 따라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때 손해를 보았다. 연구대상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상호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49회 발행하였고, 이 중 37회 후순위채권이 감독기관의 회계분식 적발 및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 지정되어 외부이해관계자의 손실로 이어졌다.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동 기간 동안 발행한 후순위채권 금액은 총 8,060억원이다. 외부이해관계자는 주로 일반 국민으로 후순위채권을 예금의 한 종류로 잘못인지하거나, 대형 상호저축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믿고 투자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다만,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에 고령의 노인 등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해당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동 상품을 예금자보호가 되는 예금 등으로 설명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정되어 투자금액의 일부를 파산채권의 형태로 돌려받았다. 금번 연구를 통해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 초기 자본증가를 위해 유상증자나 후순위채권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가 일반 국민 등 외부이해관계자와의 경영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부이해관계자가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 3 절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금번 연구에서 채택된 가설에서 보듯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는 회계분식으로 말미암아 외부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이를 기초로 외부이해관계자에게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간을 연장하며 불법적 이득을 취하였다. 또한, 향후 감독원의 검사 등으로 회계분식이 적발되어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때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손실로 위험을 전가시켰다. 결국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 등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는 것이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효율적 자본조달 방법 결정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상호저축은행 회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즉,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규제·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내부 및 외부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정부 비대칭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역선택을 선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및 회계 관련사항(IFRS 등)이 점점 규제완화와 자율경영을 강조하고 있기에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규제·감독규정으로 새롭게 회계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이해관계자 보호의 중요성이 결국 경제기반의 기본임을 알리고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

2. 내부감사의 개선방안

상호저축은행의 내부감사는 이사회에 설치된 감사위원회 혹은 상근감사에 의하여 실시된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되게 되는데, 감사위원 중 반드시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3분의 2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즉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사에 의해 만들어진 재무제표에 대해 이사회에서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실효성과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이사회로 귀속되어 있음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상호저축은행 내 임직원 영향력에 있어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에 대해 독립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감사의 독립성 및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제도상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위해서는, 경영진과 감사위원에게 지소적인 회계윤리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외부감사의 개선방안

대부분의 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동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회계관련 투명성과 독립성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감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하 법률)은 외부감사인이 자율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로 말미암아 외부감사인 사이의 치열한 회계감사 수주경쟁과 저가 수주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낮아지고, 외부감사인이 역으로 감사대상 상호저축은행의 눈치봐야하는 감사환경이 초래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선임제를 개선하여 지정선임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

다. 규제·감독기관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의 지정사유가 확대되고, 외부감사인의 지정 신청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인의 선임권한을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 혹은 상근감사에게 이관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회계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회계감리 개선방안

금융감독원의 2016년도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회계감리 실적을 살펴보면 133개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였고,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 2017년도에는 172개 상장법인과 관련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및 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를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회계감리 인력이 부족하여 감리주기가 상당히 장기화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가능성이 결과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계감리조직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감리를 위한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규제·감독기관이 감리를 통해서 상호저축은행이나 외부감사인에 대해 언제든지 회계부정이 적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상호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종합 개선방안

상호저축은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역선택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사례에서와 같이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공급되는 재무제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에 의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필요 및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작성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여 회계에 대한 경영진의 자의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기초로 더 나

아가 공시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부정을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내부회계 관리제도)·외부감사 및 감독기관의 감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회계부정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예금주 및 후순위채권자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이해관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그런데 실제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분식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부정의 요인이 경영진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이해관계자에게 조작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런 조작된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감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에는 직접당사자인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에 국한되지 않고, 감사기관(내부회계관리자)과 외부감사인이 모두 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회계기준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계윤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영진의 회계윤리에 대한 자발적 구현 의지와 함께 회계처리에 관한 경영진의 재량권에 대한 지배구조상의 견제수단(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법과 감독기관의 검사로 회계분식이 적발되어 이에 따른 필요자본 부족으로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되는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자본조달 방법 결정시 후순위채권 발행을 확인하면 동 상호저축은행이 향후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조달 방법을 연구함에 있어 후순위채권 발행이나 유상증자 횟수로 분석하였고 후순위채권 발행금액이나 유상

증자 금액을 분석대상으로 하지 못했다. 이는 정보 비대칭으로 자본조달 방법을 결정되는 횟수가 중요했기 때문이나 보다 수준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후순위채권 발행금액이나 유상증자 금액 등도 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대주주 지분율과 상호저축은행 부실화도 일정수준에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증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아주 높은 경우 경영권 등에 대한 부담이 없어 자본조달시 건실한 상호저축은행도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많은데 동 자료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이러한 요인들 고려한 보다 개선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보도 자료>

금융위원회,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http://www.fsc.go.kr, (2010.4.30)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http://www.fsc.go.kr, (2011.7.20)

금융위원회,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부과 등”, http://www.fsc.go.kr, (2011.9.18)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등 설명회”, (2016.11.18)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2017.1.23)

<책· 잡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14.

예금보험공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 백서”, 2017.

예금보험공사, “FY18.2분기 저축은행 경영위험분석”, 리스크리뷰지 2018.9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경영현황”, 2018 홈페이지 금융회사 종합정보, 저축은행 경영정보

이순호, “금융위기이후 미국저축기관 동향 및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2012.

이시연, “저축은행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0권 40호, 2011.

“저축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필요성”, 주간금융브리프 21권 4호, 2012.

“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주간금융브리프, 2012.

<논문>

김성태, “부실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5권 제1호, 2014

김상조, “저축은행 부실의 현황, 원인, 대책”, 한국금융학회, 2011.

김학건, 박광우, 오승곤, “저축은행 부실행태분석 및 부실예고지표에 관한 연구”, 2016

박경서, 정찬식, “지배주주 지분율이 저축은행의 고위험 추구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제44권 제5호, 2015

전선애, 이민환, “상호저축은행의 소유, 지배구조가 경영성과 및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2008.

정지만, 오승곤,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1호, 2010.

강현정, 유순미, 김현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상호저축은행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February 2017, Vol.71, pp.151-178

양승권, 이수욱 “기업소유구조가 정보비대칭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30 December 2012, Vol.12(4), pp.181-196

신호영, 박희진 “수익비용대응과 정보비대칭”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 pp.217-239, 전체 23쪽 2015.09.30.

이소현, 안승철, 권순용 “한국증권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이 자본조달행태와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9권4호, 2012년 12월, pp.143-165

조영민 “한국 자본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자사주 매입의 부의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7년 8월

김창수, 천미림 “분식회계기업의 내부지배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1호, 2009년 2월, pp.575-593

이천현 “분식회계의 실태와 효율적 제재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6권 제1호 , 2014년 6월, pp.197-236

박종성, 박래수 “감독기관의 분식회계 적발 노력에 대한 게임모형을 이용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2009년, Vol.10(4)
김문철, 안성희 “우회상장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감사실패: K사 사례”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24권3호, 2015년 06월, pp.267-295
김용국 “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방식이 저축은행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 공기업정책학과 대학원 학위논문, 2017년 8월
이진효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에 관한 연구” 법과기업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년 08월, pp.121-151
Altman, E.I., B. Brady, A. Resti, and A. Sironi, “The Link between Default and Recovery Rates: Theory, Empirical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Vol. 78, 2005,
Emery, K., “Moody’s Loan Default Database as of November 2003,” Moody’s Investors Service, December 2003.
Grunert, J. and M. Weber, “Recovery Rates of Commercial Lending: Empirical Evidence for German Compani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33, 2009.

Abstract

SEUNGHO CHOI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ost studies of mutual savings banks in the meantime have been analyses of the causes of insolvent savings banks. In particular, this has resulted in insolvency in asset management by raising high-interest deposits and investing in high-risk assets in the concentration of real estate loans, such as PF loans. Meanwhile, another feature of the insolvent savings bank was its designation as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after a large-scale accounting classification was revealed through the inspection of the supervisory institution.

This study wanted to draw up th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link between accounting classification and capital procurement methods of insolvent saving banks.

In case of mutual savings banks that have been accounting fraud when mutual savings banks make decisions on how to raise capital, internal stakeholders, such as management and major shareholders, have a firm grasp of the poor management status of the mutual savings banks before accounting fraud, but external stakeholders will only identify the distorted management

status based on the disclosure data.

This means that information asymmetry occurs in identifying the management status of mutual savings bank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takeholders.

In determining the method of capital procurement under this information asymmetry, internal stakeholders may use information superiority to pass losses on to external stakeholers in the information asymmetry.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mutual savings banks, which had accounting classification when deciding how to raise capital, preferred the method of capital procurement by issuing subordinated bonds of external stakeholders rather than the increase in the paid account of internal stakeholders. With this procedure, internal stakeholders transferred capital losses to external stakeholders in the event of insolvency in the future.

Therefore, the government derived policy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such as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to overcome inefficiency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keywords: mutual savings bank, insolvency, information asymmetry, internal stakeholders, external stakeholders, accounting fraud.

student number: 2018-28513